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7
----------	------

2013년 7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6월 19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및 공공부문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안 제5조, 제6조, 제7조),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종을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안 제3조, 제8조).

- 또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의 고용지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명시함(안 제10조,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제안 배경 및 개요

-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세부사항별 검토결과

가. 시장의 책무 관련 (안 제2조)

- 안 제2조는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일반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
특히 2013년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 등 총 14개 사업으로, 451억 5천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표〉 2013년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목적	'13년 예산(백만원)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쾌적한 생활보장 및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 강화	1,348 (국비 50%, 시비 50%)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 제공(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등)	23,465 (시비 100%)
3	행복플러스작업장 건립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건립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1,600 (복권기금 100%)
4	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 홍보 등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895 (국비 155, 시비 740) ※ 자부담 1,853
5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 특성별 맞춤형 상담, 취업연계, 현장훈련, 사후지도 등	1,322 (시비 100%)
6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10,315 (국비 348, 시비 376, 구비 317)
7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통합서비스센터 건립	5,077 (국비 1,095, 시비 3,982)
8	발달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향상	531 (시비 100%)
9	장애인 양봉단 지원사업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150 (시비 100%)
10	장애인 영농 지원사업	장애인특성에 맞는 영농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300 (시비 100%)
11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구직장애인과 구인업체간 만남의장을 통한 폭넓은 일자리 선택기회 제공	100 (시비 100%)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비예산
13	서울특별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기능수준 향상	50 ※고용노동부 공동 주최(75백만원)
	2013년 예산 총액		45,153 (국비 6,962, 시비 35,020, 구비 3,171) ※복권기금 1,600포함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7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무만을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27조제1항1)에 근거한 것으로, 시 투자·출연기관 등 서울시 및 공공부분 일자리가 창출되고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제2항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 이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률²⁾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상향하고(공무원6%, 투자출연기관5%),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 자치구, 시 투자 출연기관 등의 정원은 총 62,176명으로, 이중 장애인은 2,135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고용비율은 3.43%임(2013. 5월말 기준),

따라서 이는 혼시적인 규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표〉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현황

(기준일 : 2013. 5월말 기준)

구분	정 원		비 율		
	정원	장애인 고용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A)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B)	의무비율 대비 차이 (B-A)
서울시	9,868명	267명 (중증 39명, 경증 228명)	3%	3.1%	0.1%
자치구	30,942명	1,232 (중증 246명, 경증 986명)	3%	4.7%	1.7%
시 투자 출연기관	21,366	636	2.5%	2.97%	0.47%
총계	62,176	2,135	3%	3.43%	0.43%

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시장은 매년 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26조³⁾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2년마다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2년마다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과 병행하여, 서울시 차원에서도 의무고용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조사와 연계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 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 바,
 - 이는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용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임.
- 2013년 예산 258억 7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임.

〈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내역

구 분	사업내용	2013년 예산 (단위:백만원)
1.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	24,812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용자 지원대상	-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지원대상	
4.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서울시장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895
5.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시 장애인 고용 민간기업 우대 가산점 부여(재무과, 희망서울종합계획) - 장애인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지원(창업소상공인과, 희망서울종합계획) 	-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지원(창업소상공인과, 희망서울종합계획) 	-
7.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165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 계		25,872

바. 기타 수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는 사항

- 안 제5조에 시 투자·출연기관도 시 공무원에 준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검토가 필요함.
- 안 제11조 제6호의 우대조항은 지원책을 규정한 여타 다른 조항과 상치되므로 따로 항을 신설하는 게 타당함.
- 안 제12조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市 관계기관 등과 상호협력력을 위한 협약 조항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음.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장애인이 자활·자립을 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해 직종 발굴 등을 우대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정신장애인'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람
- 답변 : 현재 직업재활시설에 '정신장애인'이 2~3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그 인원과 비율을 늘릴 것임. 별도로 '정신장애인'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인 등에 포함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 이유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의 고용을 시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관계기관 등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 내용

-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제2항).

-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67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5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의 고용을 시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관계기관 등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제2항).
- 나.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나. 기 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투자·출연기관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중 “권고할 수 있으며”를 “권고하고”로 하고,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항 제7호를 제6호로, 같은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안 제11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보조금”을 “제3항의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증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안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7조제1항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법제28조제1항에 따른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p> <p>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한 우대</p>	<p>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u>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투자·출연기관은 법제28조 및 제28조의 2에 따른다.</u></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u>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 ----- -----<u>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u></p> <p>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원안과 같음)</p> <p>1. ~ 5. (원안과 같음)</p> <p><삭제></p>
<p>7. (생략)</p> <p>8.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생략)</p> <p>③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u>6.</u> (원안 제7호와 같음)</p> <p><u>7.</u> (원안 제8호와 같음)</p> <p>② 시장은 <u>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증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u></p> <p>③ (원안 제2항과 같음)</p> <p>④ <u>제3항</u>----- ----- -----.</p>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 -----.</p> <p>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p>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 6.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 7.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8.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각종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투자·출연기관은 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8.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취업 후 적응 지도)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배치, 작업 보조구·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7조제1항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법제28조제1항에 따른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p> <p>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한 우대</p>	<p>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u>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시 투자·출연기관은 법제28조 및 제28조의 2에 따른다.</u></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u>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 ----- -----<u>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u></p> <p>제1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원안과 같음)</p> <p>1. ~ 5. (원안과 같음)</p> <p>〈삭제〉</p>
<p>7. (생략)</p> <p>8.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생략)</p> <p>③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u>6.</u> (원안 제7호와 같음)</p> <p><u>7.</u> (원안 제8호와 같음)</p> <p>② 시장은 <u>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증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u></p> <p>③ (원안 제2항과 같음)</p> <p>④ <u>제3항</u>----- ----- -----.</p>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 -----.</p> <p>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p>